

제321회 임시회
2013. 6. 18.(화)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6. 18.(화)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3년 6월 3일

다. 회부일자 : 2013년 6월 4일

라. 상정일자 : 2013년 6월 12일

- 제3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2013년6월12일) : 상정

- 제3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2013년6월13일) : 질의·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강호동)

가. 제안이유

○ 새 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에 따라 지방 차원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명칭변경하고 균형건설국의 일부 기능을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구조정

- 국 명칭변경 : 행정국 → 안전행정국(안 제7조)

○ 분장사무 조정 등

- 안전행정국 사무 신설 (안 제7조)
 - 재난안전관리 총괄 및 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 신설

○ 균형건설국 사무 일부 조정 (안 제12조)

- 재난안전관리 총괄 기능의 이관에 따른 사무 조정
(재난관리 → 자연재난관리)

○ 그 밖의 개정사항

- 다른 조례 개정 : 국 명칭변경 등에 따른 일괄 개정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한철우)

금번 개정조례안은 새 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안전 관리체계 전면 개편에 따라 지방 차원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기위하여 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명칭변경하고, 균형건설국의 일부기능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행정국의 명칭을 안전행정국으로 변경하고, 안전행정국 사무에 재난안전관리 총괄 및 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균형건설국 사무 중 재난안전관리 총괄 업무 이관에 따라 재난관리를 자연재난관리로 변경하는 것 등과 조례개정에 따른 행정국 명칭변경으로 타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를 신설하는 것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나, 안전총괄과를 균형건설국이나 소방본부에 두지 않고 안전행정국에 두어야 하는 이유와 민생사법경찰팀을 감사관실에 두지 않고 안전총괄과에 두는 이유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안전행정국) 안전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의전, 행사, 보안, 기록물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인사, 교육고시, 복무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단체,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자치행정 일반, 행정구역 및 여론동향,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5. 시군 자치행정, 인사운영 지도·지원
6. 주민등록·인감증명제도, 선거, 국민·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7. 과거사 정리에 관한 사항
8. 민간협력, 새마을에 관한 사항
9. 자원봉사 및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사항
10. 여권 및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 11. 재난안전관리 총괄 및 사회안전에 관한 사항**
12. 민방위, 국가기반보호, 비상대책, 경보통제에 관한 사항
13. 지방세, 세입관리, 세무지도, 기부금품 모집 통제에 관한 사항
14. 예산의 집행·결산 등 회계업무,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제2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2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제21호부터 제26호로 하며, 같은 조 제21호(종전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자연재난관리,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 재정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의 일반행정분과란 중 부서 “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⑤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⑧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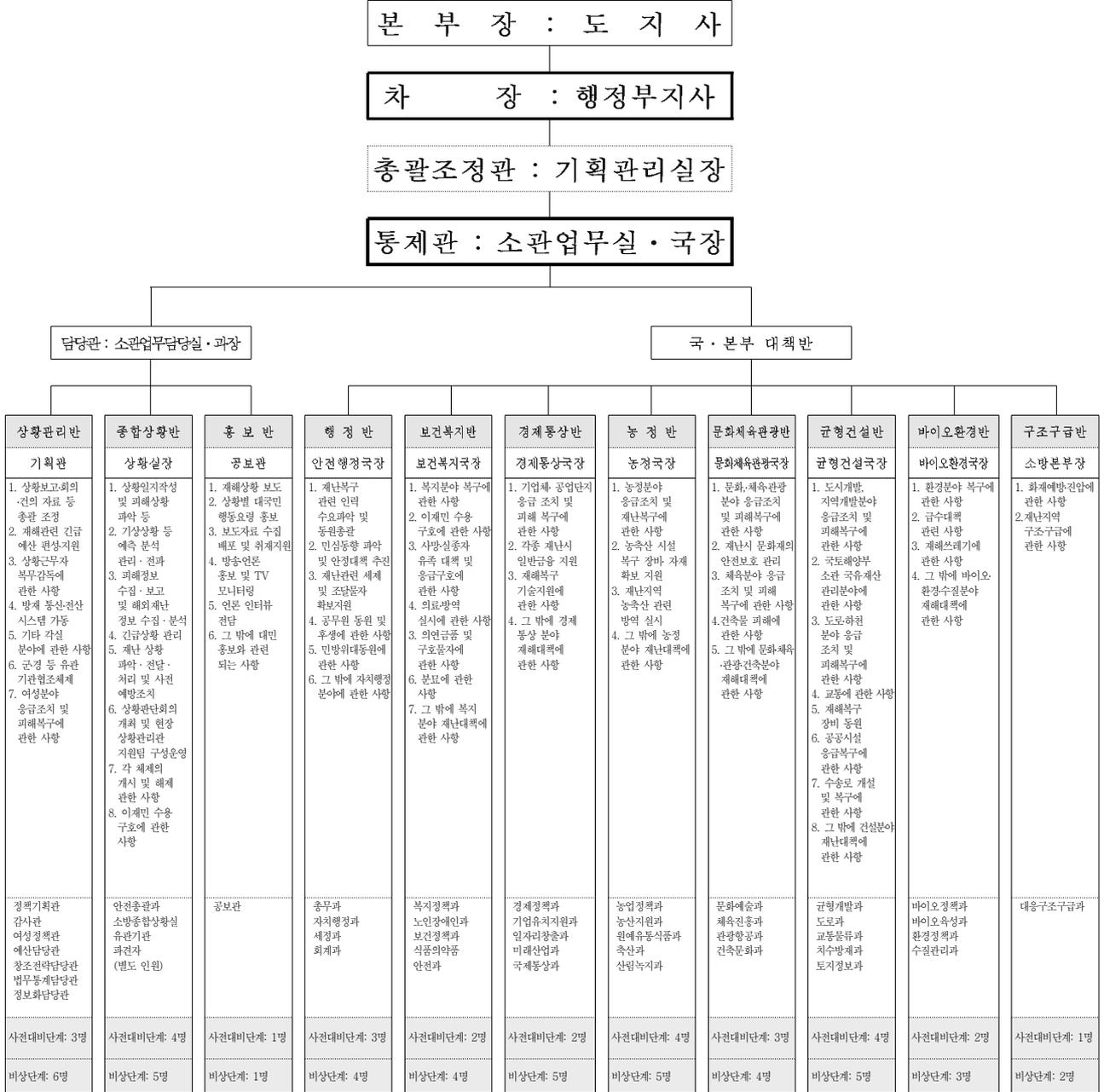
⑩ 충청북도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 ⑪ 충청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 ⑫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 ⑬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 ⑭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 ⑮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 ⑯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 ⑰ 충청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⑱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 ⑲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 ⑳ 충청북도 상징물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정책관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 ㉑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 ㉒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행정문화위원회”를 “건설소방위원회”로 한다.
- ㉓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충청북도정책관리실장”을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별표 1]

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제4조제3항 관련)



<근무방법>

1. 국·본부 주무 과장은 대책반장을 보좌한다.
2. 근무반원 편성은 2개조로 편성 24시간 교대로 근무한다.
(사전대비단계 29명, 비상단계 44명)
3. 실·국·본부 근무자를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각 실·국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재난 상황에 따라 일부 대책반을 소집하고 그 외에는 각 부서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4. 유관기관 파견자는 종합상황반에 소속되어 상황실장 통제 하에 근무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실·국·단·본부의 설치)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행정국, 보건복지국, 경제통상국, 농정국, 문화체육관광국, 균형건설국, 바이오환경국,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이하"통합추진지원단"이라 한다), 혁신도시관리본부 및 소방본부를 둔다.	제5조(실·국·단·본부의 설치)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안전행정국, 보건복지국, 경제통상국, 농정국, 문화체육관광국, 균형건설국, 바이오환경국,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이하"통합추진지원단"이라 한다), 혁신도시관리본부 및 소방본부를 둔다.
제7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종 의전, 행사, 보안, 기록물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인사, 교육고시, 복무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단체,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민방위, 국가기반보호, 비상대책, 경보통제에 관한 사항 5. 자치행정 일반, 행정구역 및 여론동향,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6. 시군 자치행정, 인사운영 지도·지원 7. 주민등록·인감제도, 선거, 국민·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8. 6.25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노근리사건 명예회복 등 과거사 정리에 관한 사항 9. 민간협력, 새마을에 관한 사항 10. 자원봉사 및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사항 11. 여권 및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12. 지방세, 세입관리, 세무지도, 기부금품 모집 통제에 관한 사항 13. 예산의 집행·결산 등 회계업무,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안전행정국) 안전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종 의전, 행사, 보안, 기록물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인사, 교육고시, 복무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단체,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자치행정 일반, 행정구역 및 여론동향,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5. 시군 자치행정, 인사운영 지도·지원 6. 주민등록·인감증명제도, 선거, 국민·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7. 과거사 정리에 관한 사항 8. 민간협력, 새마을에 관한 사항 9. 자원봉사 및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사항 10. 여권 및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11. 재난안전관리 총괄 및 사회안전에 관한 사항 12. 민방위, 국가기반보호, 비상대책, 경보통제에 관한 사항 13. 지방세, 세입관리, 세무지도, 기부금품 모집 통제에 관한 사항 14. 예산의 집행·결산 등 회계업무, 재산관리,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균형건설국) 균형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0. (생략) 21. 유도선 및 수상레저사업의 관리·지도 22. 재난관리, 재해예방대책, 재해조사 및 복구 계획의 수립 23. ~ 27. (생략) 	제12조(균형건설국) 균형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0. (현행과 같음)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1. 자연재난관리,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22. ~ 26.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